

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1]

손해배상금 신청서 첨부서류(제13조제1항 관련)

1.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가.
「의료법」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
나.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
1) 진료비·약제비 영수증 및 의료기기·의료소모품 구입 영수증
2) 진료비·약제비 명세서 및 의료기기·의료소모품 명세서
3)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[1) 및 2)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]
다. 간병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
1)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확인서(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만 해당한다) 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
2) 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어 향후 치료비 또는 후유장애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가.
배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
나.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
3.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소득이 있었던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.
손해배상금 신청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나.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사업소득자인 경우: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
4.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: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
5.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: 손해배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.
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

나. 사망 당시 의무기록

다.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

라. 장례비 영수증 등 피해자의 장례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6.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7. 그 밖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